

※ 진단서(소견서) 최초 발행 시 의료법 제 17조 1항에 의거 환자 본인 이 외에 발급이 불가합니다.

- 직계가족 내원시 : 환자자필 서명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, 보호자 신분증
- 대리인 내원시 : 환자자필 서명 동의서, 환자자필 서명 위임장, 환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

환자 본인	성 명	생년월일
	연락처(전화번호) (전자우편주소)	
	주 소	
신청인	성 명	환자와의 관계
	연락처(전화번호) (전자우편주소)	생년월일
	주 소	
동의 내용	01. 열람 [] / 02. 사본 발급 [] / 03.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전송·송부 [] (동의할 사항 []에 “√” 표시)	
	의료기관 명칭	전송·송부 받을 의료기관 명칭(진료기록 전송·송부의 경우만 적습니다)
	진료기간	
	발급(전송·송부) 사유	
	발급(전송·송부) 범위(환자 본인이 직접 적습니다)	
예시) 진료기록부 사본, 처방전 사본, 수술기록 사본,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의 사본, 방사선 사진(영상물 포함), 간호기록부 사본, 조산기록부 사본, 진단서 사본,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등		

이
한
문

※비고 : 환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.
 ※의무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.
 대리인이 본 서식을 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할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및
 형법 제 234조 동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.